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4. 23)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임명호)

□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52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 기술제안심의 및 설계변경심의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

-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바.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해당 위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아.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 공사 금액을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한 사유는?	○ 총공사비 10억 이상으로 자문 및 심의 할 경우에는 도로포장이나 확장 등 단순업무도 포함되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 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 위원회는 18개 분야별로 구분되고 회의 개최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위원이 다수 발생시에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였음.
○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대상 공사 금액을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중대한 설계별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으로 정한 사유는?	○ 건설기술관리법상에 50억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기준을 준용한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1.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의 산정은 제외한다.

가. 시·구에서 시행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시·구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지로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심의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심의 요청기관”이라 한다)은 심의요청서, 공사설명서 및 관련 설계도서(기본계획, 현황조사, 구조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설명) 심의 요청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

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전기술 검토) ①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심의 요청기관

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85호
의결 년월일	2010. 4. 26 (제160회)

제출년월일 : 2010. 4. 1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52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 기술제안심의 및 설계변경심의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함(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담당국장으로 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해당 위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 **첨 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1.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의 산정은 제외한다.

가. 시·구에서 시행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시·구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 짓
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심의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심의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심의 요청기관”이라 한다)은 심의요청서, 공사설명서 및 관련 설계도서
(기본계획, 현황조사, 구조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등 자문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
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설명) 심의 요청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전기술 검토) ①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심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9.11.26>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2008.1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신설 2009.11.26>

⑧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09.11.26>
[본조신설 1999.10.30]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1.26] [시행일 : 2010.1.1]

제23조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세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본조신설 2009.11.26] [시행일 : 2010.1.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체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9.20]

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9.2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8.3.21>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현행조례)

부천시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부천시 조례 제19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등 용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구성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관련 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 2명과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위원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①위원회의 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구에서 시행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시·구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준설공사

3.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③중앙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요청) ①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와 공사설명서·사전검토서 및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방법) ①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영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기본설계·시공입찰서의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계점수를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전문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위원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전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대상사업 주관부서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